

의안번호	2209912
의 퇴 인	정진욱 의원
회 답 일	2025. 6. 16.
추계번호	25A234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를 비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부담함(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10(천연가스 비축의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10조의10제3항에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비축하는 데 따른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¹⁾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부담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르면,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8호) 제2조에 따르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은 “영 제6조의3²⁾에서 정한 해당절기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91분”에 해당함

－ 최근 5년 동안 비축의무량(일평균) 현황은 2024년 기준 89만톤임

[표 1] 연도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단위: 만톤)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축의무량 (일평균)	65	72	88	92	8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개정안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비축의무량과 비축에 따른 제반비용(가스 도입비용, 하역비용, 저장비용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비축의무량과 가스 도입비용 등이 불확실하여 이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일평균 비축의무량인 89만톤에 대해 도입비용은 7,654억원(평균 수입단가 86만원/만톤 적용), 하역비용은 38억원(하역비용 2.8억원/항차[6.5만톤] 적용)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함³⁾

2) 제6조의3(천연가스 비축의무량) ①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해당 월의 전월월부터 최근 24개월(산정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중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속하는 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3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동절기 또는 하절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절기: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국제 천연가스 시장 상황 및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국내 천연가스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연가스 비축량의 급증으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3) 이러한 비용은 비축의무량을 도입하는 데 따른 일회성 비용이며, 비축의무량의 저장에 따른 비용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